

[별지 제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단독정화조 변경]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 성명	서울시 서대문소방서장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76-12 (전화 : 02-3144-3119)		
설치장소	④ 건물연면적	779.18 m ²	⑤ 건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방파출소)
	⑥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1-10	⑦ 오수발생량(m ³ /일) 또는 처리대상인원(인)	n(인)=0.08A(연면적) 0.08 X 647.93 = 51.83(인) (779.18-131.25(소방차고) = 647.93)
시예정 공자	⑧ 상호(명칭)		⑨ 등록번호	
	⑩ 사무소소재지	(전화)		
⑪ 착공예정일		2007년 6월	⑫ 준공예정일	
⑬ 처리방법 및 개요		FRP 부패탱크방법		
⑭ 처리용량(m ³ /일) 또는 호칭(인용)		60인용		
<p>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04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울시 서대문소방서장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시설 설계도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4. 변경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변경설계도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